

##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는 「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전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

2024년 5월 28일

대전광역시장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
- 사업대상 : 「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」의 전세사기피해자등,  
'23.6.1.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
※ 반환보증·보험 가입,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,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
- 지원요건 : 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,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
※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 현재로 함
- 사업종류 : 주거안정지원금 지원, 이사비용 지원, 월세 지원
- 신청방법
  - 신청인 : 피해자 본인 (또는) 대리인 (※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)
  - 신청방법 :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    - 방문신청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근현대사전시관 2층)
    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 (본인인증)-검색창 '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'
  - 지급방법 : 피해자 본인계좌 입금

## 2. 사업별 지원기준

(단위 : 만원)

| 지원사업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액    | 지원기준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주거안정지원금 | 피해자 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 회복에 필요한 지원금    | 최대 1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(1회)</li> <li>(1인: 60, 2인: 80, 3인이상: 100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사 비용   |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           | 최대 1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자가 실제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(1회)</li> <li>(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설치비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월 세     |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*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 | 최대 48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(최대 12개월, 월 40 이하)</li> <li>(관리비, 공과금 등은 제외)</li> <li>※ 가족** 소유 주택은 불인정</li> </ul> |

\* '새로운 주택'이란 피해자가 거주하던 전세사기 주택에서 경공매(소유권이전) 등으로 인하여 퇴거(명도)하고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간주택을 말함

\*\* '가족'의 범위 : ▷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, ▷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·자매, ▷ 사실혼 관계

※ **중복지원 불가** : 같은기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
(예시) ▷ 대전청년월세지원을 받으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을 신청 : **차액 지급 가능**  
 ▷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비 및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: **미지원**

※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, 중단, 반환(환수)

## 3.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

○ 신청기간 : 아래

- 주거안정지원금 :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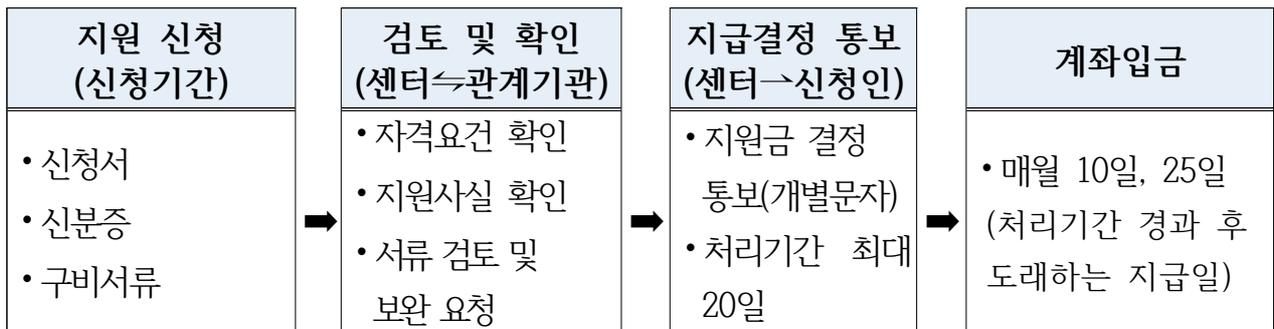
※ **단독 신청시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**

- 이사비용 : 지급사유 발생일(공공임대주택 입주) 이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

- 월세 :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

| 지원사항     | 지급사유 발생일   | 신청기간   |
|----------|--|--|
| 주거안정 지원금 |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 | ※ ‘붙임’ 참고  |
| 이사 비용    | 공공임대주택 입주일   | 입주일 부터 7일 후  |
| 월 세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</li> <li>▶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</li> <li>▶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날</li> </ul> | <p>입주일 부터<br/>5개월 경과후(1~6월분), 11개월<br/>경과후(7~12월분)</p> <p>※ 6개월씩 2회 신청 (혹은) 11개월<br/>경과후 한꺼번에 신청</p> |

- 지급방법 : 피해자 본인 계좌입금
- 지급 일 : 매월 10일, 25일
- 지원 프로세스



#### 4. 지원 제외 대상자

-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-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
-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,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

## 5. 제출(구비) 서류

| 구분     | 서류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공통     | 1.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서식1  |   |
|        | 2.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대리인 방문시 :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|   |
|        | 3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| • 서식2  |   |
|        | 4.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<br>• 전주소(최근5년 이상),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행정복지센터<br>- 정부24<br>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<br>에서 무료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5. 사실혼 증명서류<br>※ 사실혼관계 동거인이 있는 경우 | • 동거인의 등본(1년이상 거주),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| 6. 위임장<br>※ 대리인 신청시               | • 피해자 인감 날인하고, 인감증명서(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)와 함께 제출 / 서식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| 7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br>※ 대리인 신청시       | •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<br>•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행정복지센터<br>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<br>( <a href="http://efamily.scourt.go.kr">efamily.scourt.go.kr</a> )<br>무료발급 |
|        | 8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             | • 특별법 시행('23.6.1.) 후 :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<br>• 특별법 시행 전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피해확인서 가능 |   |
|        | 9. 법원 배당표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해당자에 한함(경매완료)  |   |
|        | 10. 통장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피해자 명의 계좌  |   |
| 이사비 신청 | 11.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         | • 공공임대주택(긴급주거지원, 우선공급 등) 해당  |   |
|        | 12.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                  | •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, 실제 지급한 영수증 혹은 입금 확인증  |   |
| 월세 신청  | 13.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    | •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(공공주택은 해당없음)<br>-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| 14. 월세이체내역서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새로운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불한 월세 입금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※ 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업무가 보류될 경우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피해자가 지원 제외 대상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, 지원 기간 중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취소·중지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는 이사비와 월세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공공주택 주거지원(전세임대 포함)을 받은 피해자는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1주택에 동시 2가구 이상(동일건물 동일호수를 말함)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현재 거주 중인 피해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은 피해자 1명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.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,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소, 반환, 환수,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를 원하는 경우 혹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.

- ▶ 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'결정 취하(철회) 신청서' 제출
- ▶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른 '반납신청서' 제출

- 『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』 신청 서류가 누락·미비된 경우 접수 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, 연락불능,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(지원보류)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를 접수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년도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의 지원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☎270-6521~23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붙임)

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안내

- ▶ 신청인이 피해자 결정일을 모르는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문의
- ▶ 신청기간은 평일 업무시간 기준(토,일,공휴일은 제외)
- ▶ 지원금 1차 신청기간에 지원금 신청을 못하였다면 2차 기간에 신청 가능
- ▶ 지원사업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

### ① 주거안정지원금

- (단독 신청시)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은 신청기간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, 아래 피해자 결정일은 국토부에서 통지한 결정문의 날짜임

※ 아래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

| 신청대상   | 신청기간             |          | 비고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 | 1차               | 2차       |    |
| '23.6월 이전 주택보증공사<br>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<br>피해자 결정일이 '23. 7-8월인 자 | '24.6.1~6.30.    | '24.7.~  |    |
| '23. 9~10월인 자  | '24.7.1.~7.31.   | '24.8.~  |    |
| '23. 11~12월인 자   | '24.8.1.~8.31.   | '24.9.~  |    |
| '24. 1월인 자   | '24.9.1.~9.30.   | '24.10.~ |    |
| '24. 2월인 자   | '24.10.1.~10.31. | '24.11.~ |    |
| '24. 3월인 자   | '24.11.1.~11.30. | '24.12.~ |    |
| '24. 4~5월인 자   | '24.12.1.~12.31. | '25.1.~  |    |
| '24. 6월~   | 추후 안내            |          |    |

### ② 공공주택 이사비 [또는] 월세

- (이사비용) 지급사유 발생일(공공주택 입주일) 7일 이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
- (월세) 지급사유 발생일(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일)부터 5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